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31일, 조정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4.11.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2차 교육위원회(2024.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정훈의원)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
록하여 운영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

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대안교육기관이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 소외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대안교육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한편, 지도·감독 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되는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지도·감독의 강화로 인해 대안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운영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이 기대됨.

다만,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과도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대안교육기관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강득구 의원,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서지영, 정성국 위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재정 지원 측면에서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필요가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과도하게 높은 학비와 일반 국민들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은 다소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음.